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강당 리모델링 공사(건축, 기계) 입찰공고문

【 실태조사 주의사항 】

1.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실태(사실)조사(이하 ‘실태조사’)하고,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응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①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형법」 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등
2. 개찰 선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 차 순위 업체를 실태조사하며, 계약 후에는 시공 현장 또는 본사를 방문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실태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강당 리모델링 공사(건축, 기계)

나. 현 장: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6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다. 과업기간: 착공일로부터 80일간

라. 소요예산: 287,113,200원

총 공사비	추정가액	부가가치세
287,113,200원	261,012,000원	26,101,200원

※ 세부내역은 설계서 및 내역서 참조

마. 기초금액 : 287,113,200원

※ 상기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공사구분(유형): 종합공사

2. 입찰 및 계약방법

-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 나.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7-13호)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5. 11. 03.(월) 15:00 ~ 2025. 11.12.(수) 14:00
 -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 11. 12.(수) 15:00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 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을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한정)**에 소재한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자 이어야 합니다.
 -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임.
 - 본 공사는 박물관 운영과 병행하여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적인 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나.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해당없음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경기도어린이박물관(기획운영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13조 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기준

-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pm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천한 추천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지 5> 추정가격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다.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로** 평가하고, 추정가격 261,012,000원을 기준으로 **건축공사업100%**를 평가대상 업종으로 적용합니다.
-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 재무비율 선택 시 **기준비율 [부채비율(111.36%, 유동비율(135.45%))**
-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천(“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바.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사.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으로 정한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적발된 사실이 계약부서로 통보된 경우,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을 행정처분하기 위한 청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 등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자.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 차.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산재보험, 고용보험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나.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아래 표 참조)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2,381,290	1,875,927	1,217,103	242,932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A)값
2,432,893	-	-	8,150,145

- 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114호)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9-나'호에 정한 금액(법정보험료율 인상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금액)범위 안에서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13.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등

-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제13장(건설근로자 노무비 등 지급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이행하고, 상기 지급보증서 비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및 제64조의3의 규정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라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개인별 계좌로 직접 입금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근로자의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 해당)

「건설근로자법」 제13조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 <https://ecard.cw.or.kr>

※ 전자카드제 전담 콜센터 : ☎ 1666-5119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대금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 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10-가’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10-가’호 또는 ‘10-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10-다’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6.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특히, 10억 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 또한 ①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③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2항 및 제5항, 단 해당 조문의 단서만 제한적으로 허용)

- 나.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관련규정을 준수해야하며, 관련법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8.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이용

-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적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https://hado.g2b.go.kr>)》을 이용해야 합니다.
-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 다.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선지급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항목별*로 구분하고, 지급대상자별**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구분 청구 등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하도록 규정(「건설산업기본법」제81조, 제82조)하고 있으니, 대금 청구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대금의 항목별로 구분: 건설사의 몫,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

** 공사대금의 지급대상자별 구분: 수급인,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

- 라. 최종계약자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선지급 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마.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바. 최종계약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 대금 또는 자재 장비대금에 대한 직접지급의 합의를 적극 권장합니다.
- 사.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개설한 결제계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수요기관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아. 《하도급 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안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등 발생 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0. 경기도 공공입찰 실태(사실)조사 및 기타사항

- 가.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 하고 응찰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받게 되며, 추가로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조사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같음하며, 개찰일 다음 날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다음 날까지 아래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제출 자료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실태(사실)조사 동의서 : 동의서에 기재된 위반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 후 날인 및 제출 ② 기술능력, 시설·장비 : 입찰공고일 6개월 전부터 실태조사 통보일까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종별,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자격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근로자고용정보현황(퇴직자 포함) ㉤ 임금대장, 급여 송금내역, 고용(근로)계약서 사본(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건설기술인 퇴직금 지급 자료-연금지급 등) ㉥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현황 |
|---|

- 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송금내역, 좌석배치도 또는 조직도(성명, 직함, 내선번호 기재) 및 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비 자료
- ③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 ㉑~㉔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㉑ 외부감사보고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업)
- ㉒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 ㉔ 표준재무제표증명

※ 위 ①, ②-㉑, ②-㉒, ③ 등 준비 자료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 뉴스 - 계약입찰 - 입찰공고 자료실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건설정책과 건설업조사팀 ☎ 031-8030-4132~9).

-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바.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사.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사업장 국민연금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 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기획운영팀 오미미(☎031-270-8674)
 - 공사에 관한 사항: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기획운영팀 배지현(☎031-270-8673)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ggcf.or.kr>)에 게재
-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차.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경기문화재단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감사관실: 서 은 경 e-mail : tourism@ggcf.or.kr / ☎031-231-728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3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실태(사실)조사 동의서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동 의 내 용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반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 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경기도지사로부터 낙찰 전 실태(사실)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행위를 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성실하게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응찰 공사도 준법시공할 것이므로 착공 후(또는 완공 후) 경기도지사가 준법 시공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는 행위
예) 이사감사 등 다른 법인 임원 겸임, 개인사업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거래처(건설기계임대사업자,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 자격증·경력증 소유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등
2. 건축법을 위반(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하는 행위
3. 다른 시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지사 등의 형식) 경기도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5.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모작계약, 하도급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6.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기술자 중복 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공공입찰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공공입찰 실태(사실)조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경기도지사 귀하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겠습니까.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 ○○○ (인)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음양오행론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